

1. 개정이유

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문구를 중앙 수산업·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

2. 주요내용

가. 어업재해보험심의회 관련 조항 정비

- 1) 제4조의2의제1항의 “어업재해보험심의회”를 “「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·어촌정책심의회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”를 “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·어촌정책심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<u>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</u>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	제4조의2(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·어촌정책심의회</u>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